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3011

발의연월일: 2021. 10. 28.

발 의 자: 김주영・박 정・오영환

이용우 · 이개호 · 윤후덕

고용진・류호정・아수진비

정일영 · 이병훈 · 김진표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세관공무원은 과세정보(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를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세청장은 수출입 화물또는 입출항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등 외국무역과 관련한 통계 및세부 통계자료를 신청하는 자에게 한하여 열람·교부(정기적으로 공표되는 통계는 제외)하고 있음.

한편, 관세청은 향후 관세무역데이터 분석센터(민감 정보를 안전하게 개방하도록 관세청 내에 설치한 데이터 안심구역)의 시범 운영을 통하여 수요자가 관세무역데이터 분석센터 방문 시 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 및 관세청장이 생산·분석·가공한 데이터 등(이하 "관세무역데이터"라 한다)을 제공받아 이를 직접 활용함으로써 관세정책의수립 및 평가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이에 국회·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수요자가 관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에 활용하기 위하여 관세무역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관세무역데이터 분석센터 내에서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세무역데이터의 제공·활용을 확대하고 관세정책의 과학적 연구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2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신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2조의 제목 중 "교부"를 "교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와 관세청장이 생산·가공·분석한 데이터(이하 "관세무역데이터"라 한다)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관세청 내에 설치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시설 내에서 관세무역데이터를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무역데이터는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하여야한다.
- 1. 「국회법」에 따른 국회사무총장·국회도서관장·국회예산정책처 장·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국회미래 연구원장
- 2.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 3.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① 제1항에 따라 열람·교부된 통계(제2항에 따라 공표된 것은 제외한다), 제3항에 따라 열람·교부된 통계자료, 제4항에 따라 교부된
- 한다), 제3항에 따라 열람·교부된 통계자료, 제4항에 따라 교부된 통계 및 제10항에 따라 제공된 관세무역데이터를 알게 된 자는 그 통계, 통계자료 및 관세무역데이터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세관사무에 관한 증명서, 제1항에 따른 통계, 제3항에 따른 통계자료 및 제4항에 따른 통계의 열람 또는 교부 절차와 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의 제공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2조제10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세무역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2조(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제322조(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u>교부</u>) ① ~ ⑨ (생 략)	및 <u>교부 등</u>) ① ~ ⑨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⑩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
	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와 관세청장이
	<u>생산·가공·분석한 데이터(이</u>
	하 "관세무역데이터"라 한다)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관세청 내
	에 설치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시설 내에서 관세무역데이
	터를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에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무역데이터는 개별 납세자
	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
	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u>상태로 제공하여야 한다.</u>
	1. 「국회법」에 따른 국회사무
	<u>총장·국회도서관장·국회예</u>

<신 설>

<신 설>

산정책처장·국회입법조사처 장 및 「국회미래연구원법」 에 따른 국회미래연구원장

- 2.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 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 3.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 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자

① 제1항에 따라 열람·교부된 통계(제2항에 따라 공표된 것은 제외한다), 제3항에 따라 열람·교부된 통계자료, 제4항에 따라 교부된 통계 및 제10항에 따라 교부된 통계 및 제10항에 따라 제공된 관세무역데이터를 알게 된 자는 그 통계, 통계자료 및 관세무역데이터를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① 세관사무에 관한 증명서, 제 1항에 따른 통계, 제3항에 따른 통계자료 및 제4항에 따른 통 계의 열람 또는 교부 절차와

 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

 의 제공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